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 2007.11.08.>, <3차 개정 2024.11.15.>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상명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에 근무하고 있는 교수,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 및 교직원의 지도 또는 통솔을 받아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자(이하 “교직원 등”이라 한다)의 학술연구 활동을 진작하고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함과 아울러 그 발명자의 권익을 보장하며 우리 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합리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2.27.>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명’이라 함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특허, 실용신안, 창작 등의 지식재산을 말한다. <개정 2024.11.15.>
2. ‘직무발명’이라 함은 교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것이 그 성질상 우리 대학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 행위가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02.27.>
3. ‘발명자’라 함은 발명적 착상을 하고 이를 구체화한 교직원 등을 말한다.

제 3 조 (권리의 승계) ①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은 직무발명에 의한 발명자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이 특허권을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승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직무발명에 의해 발생되는 특허권은 우리 대학교 소유로 한다. 다만, 우리 대학교 이외의 외부기관에서 연구비를 지원하는 외부수탁연구과제의 수행결과로 인한 직무발명의 경우에는 그 기관과의 수탁계약서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 <신설 2012.11.13, 개정 2023.02.27.>

③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제2항의 권리 승계여부에 대한 결정내용을 발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13, 개정 2024.11.15.>

④ 교직원 등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이루어진 직무발명의 경우 산학협력단은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 4 조 (발명자에 대한 보상) 산학협력단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승계하여 기술이전으로 인한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 2 장 신고 및 출원

제 5 조 (발명의 신고) 교직원 등이 직무발명을 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학협력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신고서
2. 양도증
3. 선행기술자료조사서
4. 발명의 내용설명서(명세서)

제 6 조 (승계의 결정 및 통지) ① 직무발명의 승계여부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최종 결정한다. 다만, 우리 대학교 이외의 외부기관에서 연구비를 지원하는 외부수탁과제의 수행결과로 인한 직무발명에 대한 국내특허의 경우에는 특허심의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산학협력단장이 승계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1.15.>

② 승계여부가 결정되면 단장은 발명자에게 제1항의 결정사항을 4개월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7 조 (권리의 양도) ① 발명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우리 대학교가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산학협력단에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3.02.27.>

② 발명자는 산학협력단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이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③ 발명자는 직무발명의 처분 또는 실시에 있어서 산학협력단 또는 실시권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따른 제반 협조를 요청한 때에는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④ 교직원 등이 퇴직 후 2년 이내에 직무발명에 해당되는 발명을 특허출원하고자 할 때에는 산학협력단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8 조 (특허출원) 단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된 직무발명에 대하여 지체 없이 산학협력단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고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특허의 경우에는 특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원한다. <개정 2012.11.13.>

제 9 조 (출원제한) ① 총장은 보안상 또는 기밀누설로 인한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특허출원을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

② 국내에 특허출원 하지 않은 직무발명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에 특허를 출원할 수 없다.

제 10 조 (특허출원 제비용) 특허출원에 따른 제반비용은 권리의 지분만큼 산학협력단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1 조 (발명자의 의무) 발명자는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출원, 심사, 심판 및 소송 기타 처분 또는 실시를 위하여 산학협력단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한다.

제 3 장 특허심의위원회

제 12 조 (특허심의위원회)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13 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단장으로 하며,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 14 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인지의 여부
2. 직무발명을 승계할 것인지의 여부
3. 직무발명의 해외출원 여부
4.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규정」 개·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02.27.>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 15 조 (회의소집과 의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시 발명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4 장 발명보상

제 16 조 (실시보상금) ① 산학협력단은 특허권의 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여로 수입이 발생하였을 경우 실시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② 실시보상금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7 조 (발명자의 지분) ①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발명자는 각자의 지분을 정하여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은 발명신고서에 기재된 발명자의 지분에 따라 각각 지급한다. <개정 2023.02.27.>

③ 제1항의 제출이 없으면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02.27.>

제 18 조 (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 ①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발명자가 퇴직한 후에도 존속한다.

② 발명자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사망할 경우 제1항의 권리는 상속인이 승계한다.

제 19 조 (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지급받은 수익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가 모인(冒認)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9 조의2 (교직원 등의 출원 등의 제한) 직무발명을 행한 교직원 등은 산학협력단에 특허를 승계하여야 하며, 산학협력단에 특허를 승계하지 않고 특허 출원 등을 하거나 직무발명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제3자에게 양도해서는 안된다.

[본조신설 2023.02.27.]

제 5 장 보 칙

제 20 조 (비밀의 유지)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 21 조 (기타의 산업체산권) 이 규정은 실용신안 및 의장에 대하여도 준용한다.

제 22 조 (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본부칙신설 2012.11.13.]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직무발명관리에 관한 규정'을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명칭 변경함)

[본부칙신설 2023.02.27.]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본부칙신설 2024.11.15]

【별지 제1호 서식】

결	담당	팀장	단장
제			

발명신고서				
발명의 명칭				
기술분야	<input type="checkbox"/> ① IT(정보기술) <input type="checkbox"/> ② BT(생명공학기술) <input type="checkbox"/> ③ NT(나노기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④ ST(우주항공기술) <input type="checkbox"/> ⑤ ET(환경·에너지기술) <input type="checkbox"/> ⑥ CT(문화기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⑦ 기타			
권리구분	<input type="checkbox"/> 특허 <input type="checkbox"/> 실용신안 <input type="checkbox"/> 디자인 <input type="checkbox"/> 상표			
발명자	성명	지분(%)	소속	전화번호
	(인)			
공동출원 명의				
관련연구과제	과제번호 (부처명)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출원희망국	<input type="checkbox"/> 대한민국 <input type="checkbox"/> PCT출원 <input type="checkbox"/> 일본 <input type="checkbox"/> 미국 <input type="checkbox"/> 유럽(EU) <input type="checkbox"/> 기타			
발명의 기술적 특징				
관련기업	국내		국외	
발명의 공개 여부	<input type="checkbox"/> 논문발표 <input type="checkbox"/> 학술지게재 <input type="checkbox"/> 연구보고서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비공개 발표일: 년 월 일 ※ 상기 발명 공개된 경우에는 발표내용 사본 1부 첨부			
비용지출처	<input type="checkbox"/> 산학협력단 예산지원 <input type="checkbox"/> 사업단 예산 지원()			
특허사무소 지정	특허사무소명: 변리사 성명: 이메일: 전화:			
실용화 가능성	기술이전 대상분야	기술이전 대상기업	기술이전 가능시기	
상기의 발명을 직무발명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고하오니 승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첨 부: 1. 양도증 1부 / 2. 선행기술자료조사서 1부 / 3. 발명의 내용설명서(명세서) 1부

4-1-11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양 도 증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양도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양수인	성명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주소			
위 발명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직무발명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양도합니다.				
200 . . .				
신고인: (인)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선행기술자료 조사서(국내·외)		
1. 산업재산권(관련기술분야 가존특허 등) 조사 [특허청 (자료열람실), KIET특허정보(D/B) 등 이용]		
기존특허 제목, 특허번호, 일자 등	본 발명의 어떤 점이 새로운가? (신규성)	본 발명의 진보성 또는 청구범위가 어떻게 다른가? (진보성)
2. 참고문헌, 학회진 등		
문헌명, 저자, 페이지 등	문헌내용 (본 발명과 관련된 요점만 간략히)	참고문헌과 비교하여 본 발명의 특징은 무었인가?

4-1-11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 서식】

명세서

1. 《 발명의 명칭 》

2. 《 도면의 간단한 설명 》

3. 《 발명의 상세한 설명 》

가. 《 발명의 목적 》

(1) 《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 기술 》

(2) 《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

나. 《 발명의 구성 》

(1) 《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

(2) 《 기능 및 작용 》

(3) 《 실시예 》

(4) 《 기타 》

다. 《 발명의 효과 》

4. 《 특허청구범위 》

《 청구항 1 》

《 청구항 2 》

《 청구항 3 》

.

.